

■ 공중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[별표 2] <개정 2021. 2. 1.>

공중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시설기준(제4조의2제3항 관련)

1. 공중 서류 통합보관시설(이하 "통합보관시설"이라 한다)의 크기는 바닥면적 49.5㎡ 이상, 높이는 2m 이상, 용적은 99㎥ 이상일 것
2. 통합보관시설의 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
 - 가. 두께 200mm 이상의 이중 내화벽돌조
 - 나. 두께 150m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
 - 다. 두께 2mm 이상의 철판 두 장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파이버 보드와 두께 75mm 이상의 고온용 실리카 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mm 이상인 구조체(비내력벽인 경우에 한정한다)
 - 라. 내화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1,010℃의 열에 대한 2시간 이상의 내화 및 이면온도 180℃ 미만 유지의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체로서 도난방지 성능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구조체의 성능에 상응하는 구조체
3. 통합보관시설의 문은 두께 2mm 이상의 철판 두 장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파이버 보드와 두께 75mm 이상의 고온용 실리카 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mm 이상인 구조체로 하고,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4. 통합보관시설 안에 설치하는 선반은 내화자재로 제작할 것
5. 통합보관시설에는 총중량이 18kg 이상인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